

정관

사단법인 자연치유관광포럼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 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연치유 관광진흥에 필요한 힐링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및 힐링 커뮤니티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이 법인은 사단법인 자연치유관광포럼이라 칭한다.

②홈페이지주소는 www.nhealingstay.com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4길 8. 616(을지로3가)에 둔다.

② 이 법인의 지부를 서울(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 20, 나동), 경기(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5-66(산남동), 경남(경남 하동군 악양면 신흥길 167), 제주(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서길 4), 부산(부산광역시 수영구 장대골로7번길 45(광안동, 유림노르웨이아침)에 두며 그 외 필요한 곳에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힐링 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힐링 관광 연구개발
3. 힐링 관광 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4. 다문화가정 힐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운영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외국인관광객 힐링투어 및 내국인 힐링투어 실시
2. 힐링 관광센타 컨설팅 및 콘텐츠 제공
3. 힐링 관광전문가 양성 및 힐링 커뮤니티 교육센타 운영

③ 제2항 각 호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의 이익) 이법인의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6명 내지 15명

2. 감사 1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1조(부이사장 및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2인의 부이사장과 다수의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부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자체 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연장자)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곤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1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15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며,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사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2조(총회 의결제척 사유) 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가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결제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자신에 관한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급히 소집요구일을 요청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제30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①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4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6(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3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잔여재산의 귀속) 이법인이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부 칙<제정 2013년 6월 7일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9년 1월 18일 변경 시행

제3조 2021년 1월 18일 변경 시행